

농산물 원산지표시 업무처리요령 개정 고시

농림부 고시 제97-79호

농림부 고시 제97-79호(98. 1. 5)로 농산물 원산지표시 업무처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전면개정하여 고시합니다.

1998. 1. 5

농림부장관

농산물 원산지표시 업무처리요령

제 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국산농산물과 국내 가공농산물 원료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항 및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수입 농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와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조사”라 함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가공업자의 사무소, 영업소, 공장 또는 창고 등에서 물품, 장부·서류 등에 대해서

제8조제1항제2호의 조사항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시료검정”이라 함은 조사기관이 수거한 시료를 검정기관이 이화학적 또는 생물학적으로 분석하여 원산지를 판별하는 것을 말한다.
- “판매업자”라 함은 원산지표시 대상 농산물 및 가공품을 판매하는 도·소매업자, 수집상 및 재포장업자 등을 말한다.
- “판매장소”라 함은 소매상의 경우 소비자에게 직접 물품을 판매하는 점포를 말하며, 도매상의 경우 중간상인 및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점포와 견본품 진열장소 및 보관창고를 말하고, 수집상의 경우 수집한 물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진열한 장소를 말

한다.

5. “단순가공식품”이라 함은 농수산물 등 자연산물을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분쇄, 절단 등의 방법으로 변형 또는 변경시키거나 이와 같이 변형·변경된 식품원료를 서로 혼합하여 만든 제품(부형제를 넣은 경우는 제외함) 또는 이를 제품에 조미식품 등을 포장된 상태로 첨부하여 만든 식품을 말한다.

6. “첨가물”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함에 있어 식품에 첨가·혼합·침윤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합성감미료, 합성착색료, 합성보존료, 산화방지제, 살균제, 표백제 또는 발색제 등을 말한다.

제3조(원산지표시 대상품목)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농산물의 원산지표시 기준 및 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 대상농산물의 원산지표시 기준과 방법은 국산 농산물의 경우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 농산물의 경우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3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표시기준

가. 수입 농산물의 원산지표시는 한글 표시를 원칙으로 하되, 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산”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그 표시방법 및 위치 등은 「별표 2」에 따른다.

나. 국산 농산물의 경우에는 “원산지 : 국산 또는 시·군명”을 표시한다. 다만, 이 경우 “시·군명”은 그 농산물을 생산한 시·군명을 말한다.

다.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출하규격품과 품질인증을 받은 특산물의 경우는 해당 표시기준에 의한 “산지”표시를 원

산지표시로 본다.

2. 표시방법

가. 농산물의 원산지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나. 합판의 원산지표시는 「별표 3」과 같으며, 파티클보드 및 섬유판의 원산지 표시는 「별표 4」와 같다.

다. 축산물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으며, 다만 국산쇠고기·돼지고기 를 부위별로 진열·판매하는 경우는 「별표 5」와 같다.

제5조(가공품 원료의 원산지표시 기준 및 방법) 제3조의 원산지표시 대상 가공품에 대한 원료농산물의 원산지표시 방법과 기준은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물, 식품첨가물, 당류, 식염은 함량순위 및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

1. 표시기준

가.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표시는 사용된 당해 원료 농산물의 배합비율 순위가 높은 것부터 표시하되, 배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원료 농산물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원료 농산물 1가지, 배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원료 농산물이 없는 경우에는 2가지 원료 농산물의 원산지 및 배합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특정 원료의 명칭이 제품명에 포함되는 경우 특정 원료가 “가”목의 규정에 의한 표시대상이 아닌 때에는 그 특정 원료의 원산지 및 배합비율을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 가지 원료에 대한 총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 배합비율 순위가 높은 원료 3가지에 대해서만 표시한다.

다. 가공품의 원료로 가공품이 사용될 경우 원산지표시는 원료로 사용된 가공품의 원농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 가공품의 원료사용으로 그 원료농산물의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예, 된장 40%, 고추장 20%, 쌀숙성물 15% 등을 원료로 사용한 “쌈장”의 원산지 표시 → 된장 40%(대두 50% 미국산), 고추장 30%(쌀 30% 수입산, 고추가루 25% 중국산)]

라. 가공업자는 가공품의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 목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무대상 외의 원료에 대하여 그 원산지 및 배합비율을 표시할 수 있다.

2. 표시방법

가. 국산 원료는 국산이라 표시되며, 가공업자는 필요할 경우 생산지의 시·군명을 표시할 수 있다.

나. 수입원료는 생산국명을 표시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생산국명의 표시가 어려운 다음의 경우는 수입산이라 표시할 수 있다.

(1) 특정원료를 3개국 이상 국가에서 수입하여 사용함으로써 원료의 생산국가명을 모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2) 특정원료의 원산지 또는 원료의 배합비율이 최근 3년이내에 연평균 3회이상 변경되었거나, 최근 1년 동안 3회이상 변경된 경우

다. 동일 원료로 국산원료와 수입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국산원료와 수입원료를 함량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라. 원료 농산물을 2차이상 가공한 원료를 보관·저장 또는 숙성 등의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할 때는 식품공전상 당해 제품의 기준 당도, 성분배합 기준에 따라 원료의 배합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예, 오렌지쥬스의 경우 오렌지과즙 100% <국산 30%, 브라질산 70%]

마. 시행령 제4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입농산물을 국내에서 1차 가공하여 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원료의 원산지는 그 원료의 생산국명을 표시되며, 가

공업자는 필요할 경우 그 원료가 국내에서 가공된 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바. 표시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 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3. 표시위치

식품위생법 제10조의 표시기준에 의한 표시사항중 “성분(원재료) 및 함량” 표시란에 추가하여 표시한다. 다만, “성분(원재료) 및 함량”란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소비자가 표시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포장전면에 표시할 수 있다.

4. 활자의 크기

원산지표시 활자크기는 포장표면적이 50cm²이상인 경우는 12포인트(18급) 이상으로 하고 50cm²미만인 경우는 8포인트이상(12급)으로 한다.

5. 색깔

활자의 색깔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색도로 표시한다.

6. 표시변경

가공품 원료의 수급사정으로 원료의 원산지별 배합비율의 변경이 있는 경우 종전의 원산지별 원료함량에 대하여 그 증감범위가 30퍼센트이내일 때에는 이미 종전의 원료 배합비율이 표시된 포장재의 재고량이 모두 사용될 때까지 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증감범위 30퍼센트는 특정원료별 총함량에 대한 백분비를 말한다.

제 6 조(조사업무담당기관) 원산지표시 조사업무는 시행령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농산물검사소장(이하 “조사업무 담당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담당한다.

제 7 조(원산지표시 조사공무원) ①조사업무 담당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 중에서 농산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검사경험이 풍부한 자를 조사원으로 임명하여 원산지표시 대상 농산물에 대한 조사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②조사원이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판품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동법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조사원증을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8조(조사) ①조사업무 담당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의 적정성을 조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상설조사반을 편성하여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원산지표시 조사업무를 실시한다.

1. 조사장소 및 대상

조사장소는 수입업자·판매업자·가공업자의 사무소·영업소·공장 또는 창고 등을 말하고 조사대상은 조사장소내의 원산지표시 관련 장부, 서류, 물품 등을 말한다.

2. 조사항목

- 가. 원산지표시의 이행여부
- 나. 원산지표시 방법의 적정성 여부
- 다. 원산지의 허위 또는 위장표시 여부
- 라. 원산지표시 농산물의 구매 및 판매에 관한 사항
- 마. 원산지표시 농산물의 원료수불에 관한 사항
- 바. 기타 이 요령에서 정하는 사항

3. 조사방법

가. 물품조사

당해 원산지표시 대상 농산물의 외관상의 특성, 형태, 맛, 냄새 등을 이용하여 제2호의 조사항목을 확인한다.

나. 장부 및 서류의 조사

수입업자와 가공업자간의 원료수불내역, 수입업자 및 가공업자와 판매업자간의 거래내역 등을 이용하여 제2호의 조사항목을 확인한다.

②조사원은 물품 및 장부·서류를 조사할 경우에는 수검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수검자”라 한다)을 입회시켜야 하고, 수검자가 없거나 또는 입회를 불용할 경우에는 관계 조사원을 입회시킬 수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증거보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수검자로부터 당해 위반행위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수검

자가 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의 연명으로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할 때는 시행령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내용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의견진술안내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9조(시료수거) ①조사원이 검정기관의 이화학적 및 생물학적 분석이 필요하여 검정용 시료를 수거할 때에는 당해 농산물의 특성, 포장상태 및 적재규모 등을 감안하여 무작위로 적정량의 시료를 수거하고, 2등분한 후 조사원, 수검자 또는 관계인 연명으로 봉함 및 날인하여 그중 1점은 수검자가 보관하고, 1점은 검정용 시료로 사용한다.

②조사원은 시료를 수거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수검자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시료수거 불가사유서를 징구하여 조사 업무 담당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수검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조사원은 그 상황을 기재하여 조사업무 담당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업무 담당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시료수거용 봉투의 규격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농산물의 특성상 종이봉투를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비닐봉투 등 적정한 재료로 속포장한 후 규격봉투를 사용하거나 규격봉투가 적절치 않을 때에는 적정한 규격으로 제조·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조사비용의 부담)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료채취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사업무 담당기관의 장이 부담한다.

제11조(시료의 검정의뢰) 조사업무 담당기관의 장이 시료의 검정을 검정기관에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료검정의뢰서 2부를 작성하여 그중 1부는 시료와 함께 검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1부는 보관한다.

제12조(시료 검정기관) ① 시료검정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산물 : 국립농산물검사소 시험소, 국립농산물검사소장이 지정한 지소
2. 축산물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3. 임산물 : 산림청 임업연구원, 임목육종연구소
4. 가공품 : 한국식품개발연구원
5. 다만, 국립농산물검사소장은 필요한 경우 시험소 또는 특정지소를 지정하여 특정시료검정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정기관의 장은 조사업무 담당기관의 장이 의뢰하는 시료에 대하여 원산지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시료의 분석 및 검정방법) ① 당해 검정기관의 장이 시료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료접수 및 분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시료의 검정방법은 당해 검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③ 당해 검정기관의 장은 수검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입회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시료의 검정결과 통보) 당해 검정기관의 장은 조사업무 담당기관이 장으로부터 검정의뢰를 받았을 경우 이를 접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시료검정결과를 조사업무 담당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업무 담당기관의 장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5일이내에 수검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시료검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시료의 보관) 검정기관의 장은 시료검정을 한 후 재검정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남은 시료를 냉장 또는 냉동 등을 통해 변질 또는 기타 품위가 손실되지 않도록 결과통보서 발급일부터 6개월간 보관한다. 다만, 검정기관의 장은 보관중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료에 대하여는 보관기간에 관계없이 폐기할 수 있다.

제16조(과태료의 부과) ①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26조제3

항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권자가 시행령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처분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다만, 가공품에 대한 과태료부과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과태료부과대상가공업체(공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검사소 지소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국립농산물검사소 지소장은 제17조규정에 따라 해당업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원산지표시 대상 농산물 및 가공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농산물(원산지 미표시)

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당해 물품의 판매장소에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한 물량에 적발 당일의 국내산 도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가목의 국내산 도매가격은 인근 법정도매시장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준 도매가격이 없을 때에는 당해 품목의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다. 과태료의 부과금액 최소단위는 3만원으로 하고, 3만원이상은 사사오입하여 만원단위로 부과하되, 부과되는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가공품(원산지 미표시)

가. 가공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 및 「별표 7」의 기준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차 위반자 :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2) 2차이상 위반자 : 제1호의 1차 위반자가 처분을 받은 다음 날 이후에 제조·가공한 제품에 다시 원료의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원산지표시 대상 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농산물(원산지표시 기준위반)

가. 제4조 규정의 농산물 원산지표시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농산물 과태료 부과 기준에 의한 과태료부과금액의 1/2 을 부과한다.

나. 과태료부과금액 최소단위는 3만원으로 하고, 3만원이상은 사오입하여 만원단위로 부과한다.

2. 가공품(원산지표시 기준위반)

가. 제5조 규정의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표시위치, 활자크기, 색깔, 표시변경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가공품 과태료부과기준에 의한 과태료부과금액을 1/2을 부과한다.

나. 과태료의 부과금액 최소 단위는 10만원으로 하고, 10만원이상은 사오입하여 만원단위로 부과한다.

③포장되어 유통되는 농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는 동일 위반사항에 대하여 판매업자와 납품업자 및 포장업자 모두에게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상습적인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제1항의 과태료부과 기준에 의한 과태료 금액의 2배이내에서 과태료를 중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중과할 경우에는 상습적인 위반자라는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장부 등의 비치) 조사업무 담당기관의 장은 소속 조사원의 조사내역과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내역을 【별지 제9호서식】의 원산지표시 조사일지와 【별지 제10호서식】의 위반업소 처분대장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원산지표시 단속 및 홍보결과 보고) 조사업무 담당기관의 장은 원산지표시 단속 및 홍보실적을 분기별로 【별지 제11호서식】에 의거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세부실시요령) ①조사업무 담당기관의 장은 이 요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실시요령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신규로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이 지정되었을 경우 또는 원산지표시로 인해 생산농가, 제조업체에 현저한 피해가 발생된다고 판단되거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기간의 계도기간을 설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다른 법령 및 규정의 적용) 이 요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 대외무역법 등 관련법규가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농림부 고시 1996-85호('96. 12. 16)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③이 고시 「별표 1」의 원산지 표시대상농산물 및 가공품중 새로 추가된 품목에 대하여는 1998. 12. 31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한다.

『별표 1』 농산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1. 수입 농산물

- 대외무역법 제23조제1항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공고한 품목

2. 국산 농산물

- 농산물의 범위 : 해당 품목은 원형을 알아볼 수 있도록 분쇄, 절단, 압착, 박괴, 건조, 흡습, 가열, 혼합 등 처리형태나 색깔, 용도 및 성질 등을 불문한다.

		대 상 품 목
곡	류	쌀, 보리, 율무, 밀, 옥수수
잡	곡	좁쌀, 수수쌀, 기장쌀, 메밀, 팝콘용 옥수수
두	류	콩, 팽,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서	류	감자, 고구마
채	유 종	땅콩, 참깨, 들깨
채	소	마늘, 양파, 생강, 도라지, 더덕, 건고추, 당근, 오이, 가지, 연근, 견조호박, 무말랭이, 고구마줄기, 토란줄기, 토마토, 멜론, 우엉, 치커리
약	재	갈근, 감초, 강활, 건강, 결명자, 구기자, 금은화, 길경, 당귀, 독활, 두충, 만삼, 맥문동, 모파, 목단, 반하, 방풍, 복령, 복분자, 백지, 백출, 비자, 더덕, 산수유, 산약, 산조인, 산초, 소자, 시호, 오가피, 오미자, 오배자, 우슬, 황정, 음양과, 익모초, 작약, 진피, 지모, 지황, 차전자, 창출, 천궁, 천마, 치자, 택사, 패모, 하수오, 황기, 황백, 황금, 행인, 향부자, 현삼, 후박, 홍화씨, 고본, 소엽, 형개
과	실	사과, 배, 단감, 감귤, 감, 살구, 매실, 참다래, 파인애플, 앵두, 무화과, 유자, 벼찌, 포도, 대추
버	섯	영지버섯, 팽이버섯, 양송이, 느타리버섯, 목이버섯, 석이버섯, 운지버섯, 송이버섯, 표고버섯
견	과	호도, 잣, 밤, 은행
인	삼	수삼
산	채	고사리, 취나물, 고비, 두릅, 죽순
육	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산양고기, 오리고기, 사슴고기, 토끼고기, 우족, 쇠꼬리, 쇠곱창, 돈족
기	타	천연꿀, 농용, 농작, 곶감, 건조누에

3. 가공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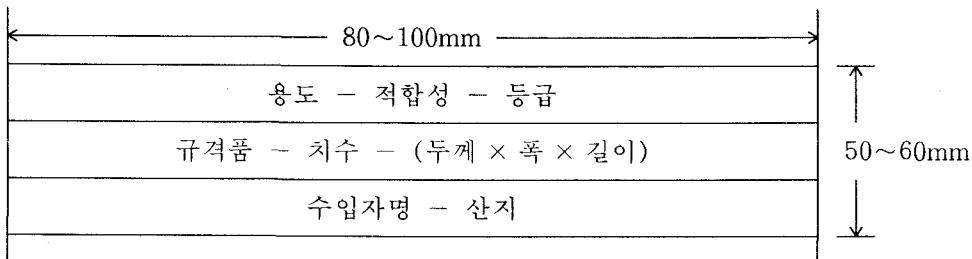
대상품목	
과자류 (포장된 것)	잼류, 식빵, 한과류, 떡류
유가공품	원유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
식육제품	소, 돼지, 닭, 산양, 오리, 사슴, 토끼, 칠면조, 면양의 식육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
통·병조림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살구, 매실, 딸기, 참다래, 토마토, 밤, 자두, 옥수수, 죽순, 버섯류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
두부류 (포장된 것)	두부, 묵류
식용유지	참기름, 들기름, 대두유, 옥수수유, 낙화생유, 채종유, 홍화유, 고추씨기름
면류 (포장된 것)	밀, 메밀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
다류 (포장된 것)	침출차, 추출차, 분말차, 과실차
청량음료	과실·채소류음료, 두유류, 채소류·과실류·곡류·두류를 원료로 사용한 혼합음료 및 탄산음료
인삼제품류	인삼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
조미식품	원산지표시 대상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간장, 된장, 고추장, 캐찹, 청국장, 춘장, 혼합장, 식초, 향신료가공품, 소스류, 복합조미식품
절임식품 (포장된 것)	마늘, 양파, 오이, 무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
특수영양식품	조제유류, 이유식류, 영양보충용식품
기타식품류	땅콩 및 견과류가공품, 과실·채소류가공품, 메주, 즉석건조식품, 전분, 추출가공식품
단순가공식품	원산지표시대상 농산물의 단순가공식품

『별표 2』 농산물 원산지표시 방법

구 분	표 시 요 령																						
1. 통관된 상태 그대로 유통되 는 농산물	<p>가. 대외무역법시행령, 대외무역관리규정 및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 고 시에서 정한 원산지 표시방법에 의해 표시하되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글, 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것 (2) 최종 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형태와 방법으로 표시 할 것 (3)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 표시할 것 (4) 영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다만, 의도적으 로 제거하지 않는 한 정상적인 배포·보관과정에서 손상되지 않 고, 최종 구매자에게 도달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보존 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2. 포장되어 유통 되는 농산물 (통관된 후 재 포장하여 판매 되는 농산물)	<p>가. 원산지 표시 활자 크기</p> <table border="1"> <thead> <tr> <th>포 장 전 면 크 기</th> <th>활 자 크 기</th> </tr> </thead> <tbody> <tr> <td>30cm이상 × 20cm이상 또는 600cm²이상</td> <td>38point(56급)이상</td> </tr> <tr> <td>15cm이상 × 10cm이상 또는 150cm²이상</td> <td>20point(28급)이상</td> </tr> <tr> <td>10cm이상 × 5cm이상 또는 50cm²이상</td> <td>12point(18급)이상</td> </tr> <tr> <td>10cm미만 × 5cm미만 또는 50cm²미만</td> <td>8point(12급)이상</td> </tr> </tbody> </table> <p>나. 위 치 : 포장전면에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p> <p>다. 색 깔 : 포장지 바탕색과 구별할 수 있는 다른 단색으로 선명하 게 표시한다.</p> <p>라. 표시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포장지 직접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랩포장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 하여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부착도 예외적으로 허용 (2) 그물망 재포장의 경우에는 꼬리표 부착 및 내찰 허용 		포 장 전 면 크 기	활 자 크 기	30cm이상 × 20cm이상 또는 600cm ² 이상	38point(56급)이상	15cm이상 × 10cm이상 또는 150cm ² 이상	20point(28급)이상	10cm이상 × 5cm이상 또는 50cm ² 이상	12point(18급)이상	10cm미만 × 5cm미만 또는 50cm ² 미만	8point(12급)이상											
포 장 전 면 크 기	활 자 크 기																						
30cm이상 × 20cm이상 또는 600cm ² 이상	38point(56급)이상																						
15cm이상 × 10cm이상 또는 150cm ² 이상	20point(28급)이상																						
10cm이상 × 5cm이상 또는 50cm ² 이상	12point(18급)이상																						
10cm미만 × 5cm미만 또는 50cm ² 미만	8point(12급)이상																						
3. 낱개 또는 산물 로 유통되는 농 산물(통관된 후 재포장하지 않 고 낱개 또는 산물거래 농산 물 포함)	<p>다음 중 1개 이상의 방법으로 표시</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표 시 방 법</th> <th>규 격</th> </tr> </thead> <tbody> <tr> <td>낱개 판매</td> <td>스티커 부착(현품)</td> <td>가로 3cm × 세로 2cm이상 또는 직경 2.5cm이상</td> </tr> <tr> <td>용기판매</td> <td>용기에 표시</td> <td>가로 15cm × 세로 10cm이상</td> </tr> <tr> <td>"</td> <td>풋말표시</td> <td>가로 15cm × 세로 10cm, 높이 10cm이상</td> </tr> <tr> <td>산물거래</td> <td>상품안내</td> <td>가로 30cm × 세로 50cm이상</td> </tr> <tr> <td></td> <td>표시판(판매장소)</td> <td></td> </tr> <tr> <td>진열판매</td> <td>안내표시판 (진열대)</td> <td>가로 7cm × 세로 5cm이상</td> </tr> </tbody> </table>		구 분	표 시 방 법	규 격	낱개 판매	스티커 부착(현품)	가로 3cm × 세로 2cm이상 또는 직경 2.5cm이상	용기판매	용기에 표시	가로 15cm × 세로 10cm이상	"	풋말표시	가로 15cm × 세로 10cm, 높이 10cm이상	산물거래	상품안내	가로 30cm × 세로 50cm이상		표시판(판매장소)		진열판매	안내표시판 (진열대)	가로 7cm × 세로 5cm이상
구 분	표 시 방 법	규 격																					
낱개 판매	스티커 부착(현품)	가로 3cm × 세로 2cm이상 또는 직경 2.5cm이상																					
용기판매	용기에 표시	가로 15cm × 세로 10cm이상																					
"	풋말표시	가로 15cm × 세로 10cm, 높이 10cm이상																					
산물거래	상품안내	가로 30cm × 세로 50cm이상																					
	표시판(판매장소)																						
진열판매	안내표시판 (진열대)	가로 7cm × 세로 5cm이상																					

『별표 3』 수입합판의 원산지 표시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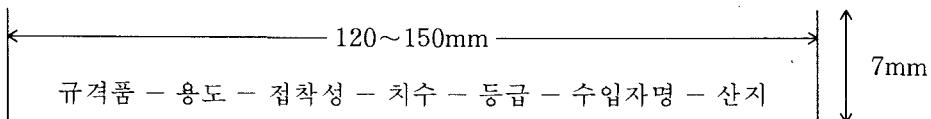
1. 뒷면 및 포장표시



주) ① 바깥테두리의 선 또는 테두리안의 선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비규격품인 경우에는 “규격품” 마크를 표시하지 않는다.

2. 측면표시



다만, 7mm이하의 합판에 대하여는 2매이상을 겹쳐서 표시할 수 있다.

(표기예시)

- 뒷면 및 포장

보통일반	준내수	(4)
규격품	2.5 × 1,210 × 2,430	
(주)선 경 · 인도네시아		

- 측면 : 규격품·보통일반·준내수·3.0×1,210×2,430 · (4) 선경·인도네시아

『별표 4』 파티클보드 및 섬유판의 원산지 표시방법

구 분	표 시 사 항
1. 표 시 위치	가. 뒷면 또는 측면
2. 표 시 크기	가. 뒷면에 표시할 경우 : 가로 3cm, 세로 2cm이상 나. 측면에 표시할 경우 : 가로 3cm, 세로 0.7cm이상
3. 표 시 방 법	가. 현품에 스티커 부착 또는 압인

『별표 5』 부위별로 진열 판매하는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

부 위 명	
등 급	
용 도	
100g당 가격	
원 산 지	↑ 3cm이상, 글자크기 50Point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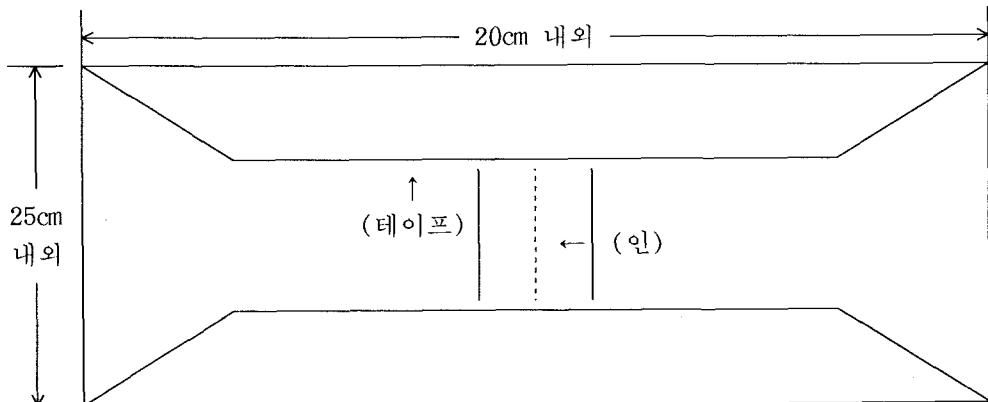
『별표 6』 원산지표시 조사시료 수거용 봉투

<전 면>

원산지표시 조사시료 수거용 봉투

1. 품목명 :
 2. 시료수거량 :
 3. 생산·수입·포장 연월일 : 년 월 일
 4. 수거지역 주소(명) :
 5. 수거관계자 조사원 (인 또는 서명)
입회자 (인 또는 서명)
 6. 수거년월일 : 년 월 일
 7. 비 고

〈후 면〉



(주) 조사원·입회인의 봉합인을 날인한다.

『별표 7』 가공품의 원료원산지 미표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1. 과태료 부과기준

(단위 : 만원)

기준액(연간매출액)	1 차 위반자	2차이상 위반자
~ 100백만원미만	15	30
100백만원이상 ~ 200백만원미만	25	50
200백만원이상 ~ 400백만원미만	50	100
400백만원이상 ~ 600백만원미만	100	200
600백만원이상 ~ 800백만원미만	150	300
800백만원이상 ~ 1,000백만원미만	200	400
1,000백만원이상 ~ 1,200백만원미만	250	500
1,200백만원이상 ~ 1,400백만원미만	300	600
1,400백만원이상 ~ 1,600백만원미만	350	700
1,600백만원이상 ~ 1,800백만원미만	400	800
1,800백만원이상 ~ 2,000백만원미만	450	900
2,000백만원이상	500	1,000

2. 산정기준

- 가. 연간 매출액은 처분 전년도의 당해 품목의 1년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신규영업, 휴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 전년도의 1년간 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분기, 전월 또는 최근의 1일 평균매출액 중 가장 합리적인 기준에 이하여 연간 매출액을 추계하여 산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확인서

상호	품목	허가(등록) 번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업종
소재지			
재고량		시료수거량	

본인(상기인)은 상기 소재지에서 ○○업을 경영하면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1. 일시 : 년 월 일 시

2. 장소 :

3. 내용 :

업주 주민등록번호 :

성명

주소

조사원 소속 : 직급 :

성명 :

조사원 소속 : 직급 :

성명 :

270-08111 일
'97. 12. 17 승인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보관용)

No. :

상 호 :

대표자 성명 :

귀하는 (품목 : 수량 : kg)에 대하여 농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과태료부과에 해당됩니다.

과태료부과에 따른 의견이 있으시면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무관청에 서면, 전화등으로 의견진술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사원	소 속	직 급
	성 명	(인 또는 서명)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발급용)

No. :

상 호 :

대표자 성명 :

귀하는 (품목 : 수량 : kg)에 대하여 농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과태료부과에 해당됩니다.

과태료부과에 따른 의견이 있으시면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무관청에 서면, 전화등으로 의견진술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사원	소 속	직 급
	성 명	(인 또는 서명)

270-08211 민
'97. 12. 17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3호서식]

시료수거불가사유서

① 품 목 명	② 시료 수거 불가사유

농산물 원산지표시 업무처리요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료를 상기 사유에 의거 제공치 못하므로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일 월 년

업체명:

주 소 :

성명 : (인 또는 서명)

○ ○ ○ 장 귀 하

270-05111 일
'97. 12. 17 승인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4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발 신 :

(직인)

제 목 : 시료검정 의뢰

농산물 원산지표시 업무처리요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료의 검정을 다음과 같이 의뢰합니다.

① 품 목	② 시료번호	③ 의뢰내용

첨부 : 시료 점

270-05211 일
'95. 9. 5 통제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5호서식]

시료접수 및 분석대장

① 접수번호	② 접수일자	③ 의뢰기간	④ 품목	⑤ 시료번호	⑥ 분석기간	⑦ 분석결과	⑧ 판정	⑨ 조사결과 통보일자	⑩ 제기일자

270-05311 부
'97. 12. 17 승인

297mm × 210mm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6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발 신 :

(직인)

제 목 : 시료검정 결과 통보

○○호로 의뢰한 시료의 검정결과를 농산물 원산지표시 업무처리요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① 품 목								
② 시료번호								
③ 접수일자								
④ 검정(분석)일자								
⑤ 분석								
검정 결과								
⑥ 관 정								

270-05411 일
'95. 9. 5 통제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7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발 신 : (직인)

제 목 : 시료검정 결과 통지

년 월 일자로 귀하(귀업체)의 사업장에서 수거한 시료의 검정 결과를 농산물 원산지표시 업무처리요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① 품목	② 제조일자	③ 검정기관	④ 검 정 (분석)일자	⑤ 검정·분석회수	⑥ 검정(분석)결과

270-05511 일
'95. 9. 5 통제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과태료처분통지서

제 호

1. 회사(상호)명 :

2. 소재지 :

3. 대표자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26조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
과태료처분내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4. 위반내용

①위반일시	②위반장소	③조사기관	④품목명	⑤표시위반물량

5. 처분내역 : 과태료 원

6. 납부일자 및 장소 : 납부고지서에 의함

7. 과태료 산출근거 및 고지사항

년 월 일

○ ○ ○ 장

직인

270-056111 민
'97. 12. 17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법적근거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26조(과태료) ①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농산물 또는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 또는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표시한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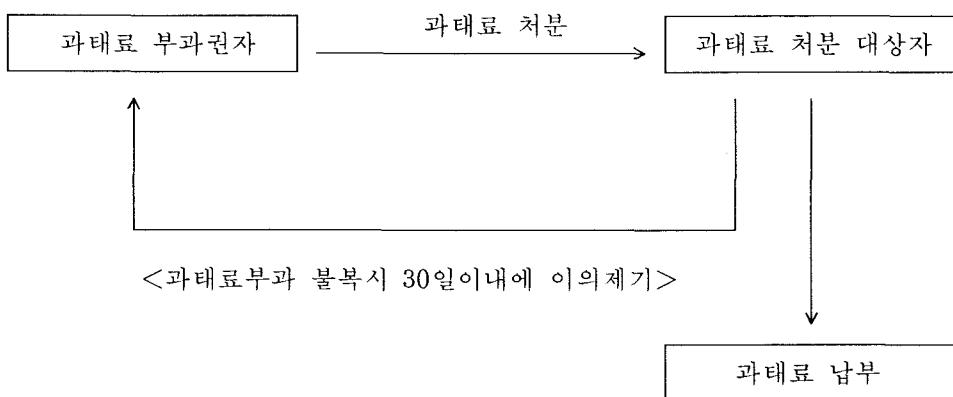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 법 제18조에 의한 유통관리전담기관의 장도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 농산물 원산지표시 업무처리요령 제17조 참조

<과태료 부과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9호서식]

원산지표시 조사일지

조사자 : 직

성명

(이) 또는 서명)

(주) 1.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① ~ ③란만 기재
2. ⑥란은 허위표시, 위장판매, 미표시, 표시기준 위반 등으로 기재
3. ⑧란은 확인서징구, 시료수거 등을 기재
4. ⑨란은 교육, 홍보 및 특이사항 기재

270-05811 비
'97. 12. 17 승인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10호서식]

위반업소처분대장

① 일련 번호	②처가 (등록) 번호	③ 상호명	④ 위반 자명	⑤ 소재지 (전화)	⑥위반사항		⑦처 분	
					⑧일자	⑨내용	⑩일자	⑪내용

270-05911 번
'95. 9. 5 통제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11호서식]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및 홍보결과 보고

1. 단속실적

구 분	단 속 인 원	단 속 횟 수	단 속 업소수	단 속 실 적(건)			
				계(a+b)	과태료(a)	금액(만원)	고발(b)
O/O분기							
누 계							

주) 단속실적은 위반사실 적발에 대하여 과태료 및 고발 처분을 한 단속기관이 실적으로 집계(예 : A기관과 B기관이 합동단속하여 B기관이 과태료 또는 고발조치를 하였을 경우 B기관만 실적으로 집계)

가. 단속 및 위반업소수 내역

계	대형 매장	슈 퍼 (편 의 점 포 함)	생 산 자 단체매장			도 매 시 장	식 육 점	청 과 점	양 곡 점	한 약 점	노 점	가 공 업 체	건 어 물 점	기 타
			농 협	축 협	기 타									
O/O 분기	단속													
	위반													
누계	단속													
	위반													

주) i. 대형매장내에 대표자가 다른 여러업소가 적발되었을 경우 개개 업소로 산정
ii. 위반업소수는 단속실적의 계(a+b)와 같아야 됨

나. 단속실적(과태료, 고발) 세부내역

시·군	단속 일시	상호	대표자	주소	위반 품목	비고		위반 수량 (kg,개)	금액 (만원)	고발조치 사항
						비고	비고			
O/O 분기		년,월,일								월,일,O O 기관
누계										

주) i. 위반품목은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을 기준으로 할 것
ii. 비고란은 가공품일 경우 “가공품”, 농산물은 수입산일 경우 “수입 또는 수입국명”, 국산일 경우는 “국산 또는 시·군명”으로 반드시 기재

270-06011 보
'97. 12. 17 승인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2. 홍보실적(○/○분기)

교육실적

계	인원	주요교육내용
	명	
공무원		
유통종사자		
소비자		
기타		

홍보실적

구분	단위	실적	주요내용	비고
TV(유선파함)	회			
라디오	"			
신문	"			
지역공보지(반회보)	매			
지역소식지등	"			
홍보책자	부			
전단(팜프렛, 리후렛등)	부			
프랑카드	매			
푯말배부	개			
안내표시판배부	"			
기타	회			

(주) 홍보 및 교육실적은 단속기관이 주관이 되어 교육 및 홍보 실시한 것만 실적으로 집계

270-06011 보
'97. 12. 17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